"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"

등록번호	문화체육과-14312
등록일자	2015.6.2.
결재일자	2015.6.2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영상물관리팀장	문화체육과장	복지문화국장		
신채경	김경희	이호현	전결 06/02 김창현		
협조자					

- 여름철 안전한 놀이문화공간 조성을 위한

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 시설안전 지도점검 계획

■ **추진기간 : 2015. 6. 2.(화) ~ 6. 26.(금) 25일간**

■ **점검대상 : 다중이용업소 총 481개소**

구분	합계	노 래 연습장	비디오물 시청제공업 (비디오감상실)	게임제공업소				
				소계	PC방 (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)	청소년 게임제공업	복합유통 게임제공업	일반게임 제 공 업
총대상 (300㎡이상)	481 (25)	302 (7)	30	149	133 (13)	6	9 (5)	1

※ 영화상영관은 2015년 4~5월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 별도의 안전점검 실시함

■ **점검방법**

○ 안전시설 검검표에 따른 시설관리자(영업자) 자체점검 후 결과 제출

○ 영업장 면적 300㎡이상 및 자체점검 미제출 시설 현장 지도점검 실시

■ **주요 점검사항 : 안전시설 등의 작동 및 유지관리 상태 점검**

○ 관련법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

○ 정기적인(분기별 1회) 소방 및 전기 안전점검 실시 여부

○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의 외관점검 등

○ 비상구 관리상태, 피난안내도 설치,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여부

○ 전기 누전차단기 작동 여부 및 방염 소파·의자 사용 여부

2015. 6.

강 남 구

(문 화 체 육 과)

【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】

검토분야	확인 및 적시사항
관련 규정 및 근거	현행 관련 법, 시행령, 조례, 규칙,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 •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•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, 제14조
추진 경위	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? • 추진경위 :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로 재난발생 사전 차단
예산 사항	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 • 검토 후 적시하였음
수 혜 자 및 범위	이 업무(사업)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? • 대상 : 강남구 주민 및 해당 시설 이용자 등
분 야 별 검토사항 〔계속 : 〕 〔신규 : 〕	이 업무(사업)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? ① 관련부서 협조 ---------- (○)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---------- (○)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---------- (○)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---------- ( ) ⑤ 시장조사 ---------- ( ) ⑥ 민간부분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------ ( )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---------- (○)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---------- ( )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---------- ( )
타 기관 사 례	타 구 사례를 파악, 비교해 보았습니까? • 타 구 실태파악 결과 25개 자치구 추진
전 문 가 자 문	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? • 해당사항 없음

- 여름철 안전한 놀이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-

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 시설안전 지도점검 계획

노래연습장 등 팀 소관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소방 안전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영업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, 사고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강남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Ⅰ 추진 근거 및 개요

■ 관련근거

○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3조

○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시행규칙 제13조, 제14조

■ 추진기간 : 2015. 6. 2.(화) ~ 6. 26.(금) 25일간

■ 점검대상 : 다중이용업소 총 481개소

구분	합계	노 래 연습장	비디오물 시청제공업 (비디오감상실)	게임제공업소				
				소계	PC방 (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)	청소년 게임제공업	복합유통 게임제공업	일반게임 제 공 업
총대상 (300㎡이상)	481 (25)	302 (7)	30	149	133 (13)	6	9 (5)	1

※ 영화상영관은 2015년 4~5월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 별도의 안전점검 실시함

■ 점검방법

○ 안전검검표에 따른 시설관리자(영업자) 자체점검 후 결과 제출

○ 영업장 면적 300㎡이상 및 자체점검 미제출 시설 현장 지도점검 실시

Ⅱ 추 진 계 획

■ 추진일정 : 2015. 6. 2.(화) ~ 6. 26(금) 25일간

점검계획 수립 점검안내문 발송	⇒	업소별 자체점검 및 현장점검 실시	⇒	점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
[6. 2 ~ 6. 9]		[6. 10 ~ 6.19]		[6.22 ~ 6.26]

■ 점검방법 : 점검반 구성 점검, 업종별 사후관리 책임제

○ 점검반 구성 : 2개조 점검반 편성 지도점검 실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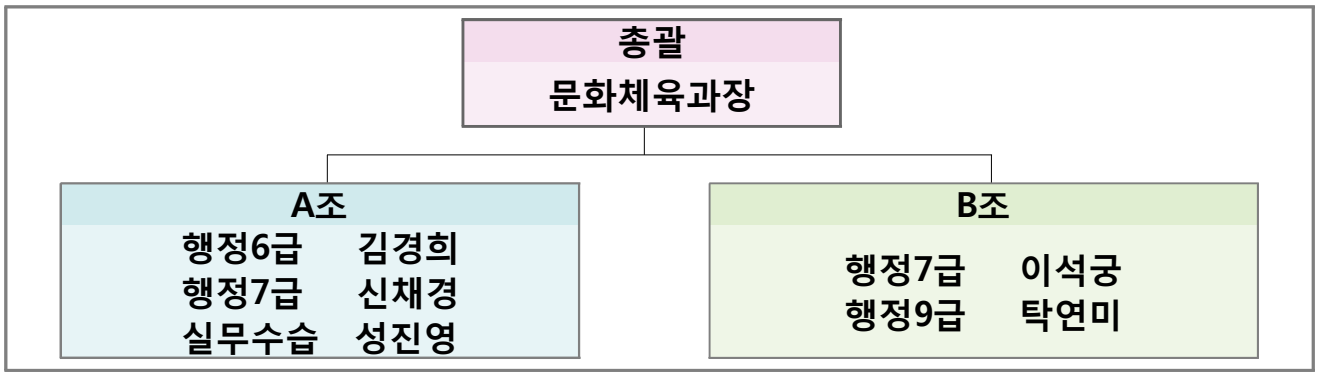

○ 점검결과 업종별 사후관리책임자 지정관리

- **노래연습장** : 행정7급 신채경, 행정9급 탁연미
- **게임제공업소, 비디오물시청제공업소** : 행정7급 이석궁, 실무수습 성진영

○ 영업장 규모별 점검방법

- 면적 300㎡미만 시설 : 안전점검표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, 검검표 제출 **(단, 자체점검 결과 미제출 시 현장 점검 실시)**
- 면적 300㎡이상 시설 : 영업자 자체점검 및 현장 지도점검
- **점검방법별 대상현황**

구분	합계	노 래 연습장	비디오물 시청제공업 (비디오감상실)	게임제공업소				
				소계	PC방 (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)	청소년 게임제공업	복합유통 게임제공업	일반게임 제 공 업
총대상	482	302	30	150	134	6	9	1
자체점검 결과제출	457	295	30	132	121	6	4	1
방문점검 병행실시	25	7	0	18	13	0	5	0

※ 영화상영관은 2015년 4~5월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 별도의 안전점검 실시함

■ 주요 점검사항 : 안전시설 등의 작동 및 유지관리 상태 점검

○ 관련법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**(현장 지도점검 시)**

○ 정기적인(분기별 1회) 소방 및 전기 안전점검 실시 여부

○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의 외관점검 등

- 구획된 실마다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및 압력게이지 지시침 점검

○ 비상구 관리상태, 피난안내도 설치,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여부

○ 전기 누전차단기 작동 여부

○ 방염 소파·의자 사용 여부

■ **점검결과 조치**

○ 경미사항과 비상통로 적치물 등 즉시 조치가능한 사항은 현장 조치

○ 유관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불가능한 기능상, 안전상 위험요인은 시설관리자 등에게 문서통보

○ 위험요인 시정 불이행 시설 관련기관 통보 및 관리

Ⅲ 행정사항

■ **점검 안내문 발송 : 영업장 등기 및 일반우편 중복 발송**

■ **점검결과 시정조치 등 업종별 사후관리책임자 지속관리**

별첨 1. 관련법규(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)

2.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

□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

제13조 (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)

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안전시설등이 건축물의 다른 시설·장비와 연계되어 작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·점유자 등 관련 시설·장비를 관리하는 관계인(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)은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② 다중이용업주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상, 점검자의 자격, 점검주기, 점검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
□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

제13조 (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)

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점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를 사용하여 점검한다.

제14조 (안전점검의 대상, 점검자의 자격 등)

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상, 점검자의 자격, 점검주기, 점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안전점검 대상 :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된 영 제9조의 안전시설등
2. 안전점검자의 자격은 다음 각 목과 같다.
   가. 해당 영업장의 다중이용업주 또는 다중이용업소가 위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(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경우에 한한다)
   나. 해당 업소의 종업원 중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3조제2항제7호마목 또는 제3항제5호자목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자,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라 소방기술사·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
   다.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
3. 점검주기 : 매 분기별 1회 이상 점검. 다만,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그 분기에는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4. 점검방법 : 안전시설등의 작동 및 유지·관리 상태를 점검한다.